



문 의

국민행복

국 무 쪼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2015. 10. 21(수)

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장 민성호 (Tel. 044-200-2341)

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장 윤종수 (Tel. 044-200-2235)

국무조정실 노시정책과장 김수진 (Tel. 044-200-2375)

21일 10:30분 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회의 시작 후 별도 배포 국토부는 보도 참고자료만 해당기자단에 배포

※ 관계부처 : 국토부 건설안전과장 박영수(Tel. 044-201-3573),고용부 산업안전과장 황종철(Tel. 044-202-7722)

"건설현장· 하청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"

- 황교안 총리 주재 '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', 건설현장·하청근로자 안전대책 논의
- '안전신고 포상제' '징벌적 손해배상제도' 도입으로 건설 안전 책임성 강화
- 하청근로자 안전 위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및 위험정보 제공 범위 확대
- 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'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'를 열어 '건설현장 안전대책'과 '하청 근로자 안전대책'을 논의하였다.
- 황총리는 "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 문제는 **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분야**로서, 안전사고는 **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**하는 심각한 문제"라고 지적하고,
- "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건설현장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점검하고,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- □ 정부는 우선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**건설공사의 전(全)과정**을 아우르는 **안전관리체계**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- 발주·설계·시공 등 전 공정에 걸쳐 각 단계별 안전책임을 강화하고, 특히 시공단계에서는 **작업자**의 **실명제**를 통해 책임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.
- □ 특히, 최근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**가설구조물**과 **소규모 공사장**에 대해 **특별관리**하는 등 대형공사장과 다름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'안전 사각 지대'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.
 - 그간 **가설구조물**에 대해서는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 했으나, 앞으로는 **본 구조물 수준의 관리**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,
 - 그동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, 앞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(5m 이상 동바리 설치 등)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.
 - 아울러, 매년 50만 개소가 넘는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**사회적 감시**를 통한 **적발**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'안전 신고 포상제'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.
- □ 한편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'**종합심사낙찰제**'로 전환하여 **본격 추진**할 예정이다.
- 황총리는 "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**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**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정비 등 **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**"고 지시하였다.

□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과 관련하여

- 정부는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일부구역(안전난간 설치 등)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원청의 안전조치를 '작업 전 구역'으로 확대하고, 사고 발생 시 원청에 대한 벌칙을 상향^{*}해 나가기로 했다.
 - * 1년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 → 5년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
□ 또한, 현재는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화학설비 등 제한된 작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, 앞으로는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- □ **황총리**는 "안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그 자체보다 **현장에서의 적용**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"면서.
 - "특히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**규제의 확장과 과도한 규제로는** 한계가 있는 만큼, 규제는 최소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위법시 퇴출 등 사후책임을 묻는 방향과 원칙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- □ 아울러 "산업현장 및 건설공사장 사업주는 안전은 소모적인 '비용'이 아니라 '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'라는 인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 것"이며,
 - "근로자 또한 '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'는 자세로 안전수칙을 **철저히** 준수해 나가야 할 것"이라고 당부하였다.
- □ 마지막으로 황총리는 "국토부,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사회의 **뿌리깊은 '안전에 대한 후전적 관행'을 근절**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"고 당부하였다.
- □ 이날 회의에는 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, 박구병 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, 백신원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, 김태구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,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, 이원호 광운대 대학원장 등 **안전분야 민간전문가** 6명이 참석했다.
 - * 붙임 1. 세부 안전대책 보고서 2. 민간 참석자 명단

불임 1

세부 안전대책 보고서

건설현장 안전대책(국토교통부)

<중점 추진방향>

- □ 건설업 재해율은 '10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'14년 크게 감소
- 그러나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, 최근에도 대형사고 지속 발생 * 부평 타워크레인전도(9월), 동대구역 슬래브 붕괴(7월) 등

< 최근 5년간 재해율 현황 >

(단위 %)

연 도	2010	2011	2012	2013	2014
전체 산업 재해율	0.69	0.65	0.59	0.59	0.53
건설업 재해율	0.70	0.74	0.84	0.92	0.73

- □ 이에 따라, **안전 관련 제도가 조속히 현장에서 정착·실천**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 실시, 안전사고 포상제 등 **현장밀착형 정책을 추진**하고,
 -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가설구조물, 건설기계, 소규모 건설 공사 등 **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시행**하며,
 - 더불어 국토부, 고용부 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양 부처가
 추진하는 안전대책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- ⇒ 이러한 대책을 통해 국내 건설분야 사망10만인율*(13.3명)을 선진국 수준(10명 미만)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* 건설분야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수, '14년 건설업 총근로자수 325만명

<세부 추진과제>

□ 건설 全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

○ (설계단계) 설계자는 현장 위험요소를 고려한 안전설계^{**}(DFS, Design For Safety)를 수행하고, **발주자는 설계의 적정성** 여부를 **검토·숭인**하여 시공단계의 안전이 확보된 설계를 현장에 적용

- * 설계단계에서 건설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설계내용에서 최대한 제거함 으로써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
- (**발주단계**)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**종합심사낙찰제^{*}를 '16년부터 전면 시행**
- *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, 해당 업체의 재해율,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낙찰자 선정시 반영
- (시공단계) 작업자,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'작업허가제'
 및 '작업실명제'를 도입하여, "先안전 後시공"원칙 정착
- (환류단계) 발주자, 설계자.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를 평가·공개하는 '안전관리 역량평가'를 '16년부터 시범실시

② 안전관리제도의 현장이행력 제고

- (**감리제 정비**) 감리자가 안전·품질관리에 대한 **지도·감독업무**를 강화하도록 **감리업무**를 **정비**^{*}하고,「건진법」,「건축법」,「주택법」에서 별도 규정하는 **감리를 통일적 체계로 일워화**하는 방안을 **검토**
- * 감리원 중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안전감리자를 선임토록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
- (취약공사 집중관리) 저가낙찰 건설공사 또는 불법 하도급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건설현장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*
- * 특별관리대상 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이행실태를 불시점검하고,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DB화하는 등 점검이력도 지속 관리
- (점검강화) 고용부와 '16년 특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행 예고식(3일전 통보) 현장점검을 불시점검 가능토록 제도 개선

③ 안전 취약분야 집중관리

○ (가설구조물) 「건진법」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(국토부·고용부)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가설 구조물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

- (건설기계)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가 설치·사용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주기를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
- (소규모공사) 소규모 공사의 위험공종*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이행토록 의무화하고, "안전신고 포상제**" 도입을 적극 검토 하며, 고용부와 실무 TÆ 운영 등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
- * 5m 이상의 동바리,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등
- ** 안전수칙 위반 및 위법사항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, 안전수칙 위반 및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
- (건설자재) 철강재(철근, H형강 등)를 대상으로 경찰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품질관리실태를 긴급점검하고, 자재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"품질관리 종합 정보시스템" 구축

4 건설안전 문화 및 기반 조성

- (관행개선) 설계변경 또는 공기지연 에 따른 공사비 증가時 반드시
 안전관리비도 중액하도록 법제화하여 안전관리비의 부족을 방지
- (관계자 역량·책임강화) 모든 건설주체의 안전관리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,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책임기간의 확대 검토
 - * 건설사고와 부실공사를 초래한 자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(「하도급법」에서는 실제 손해액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)

하청근로자 안전대책(고용부)

<중점 추진방향>

- □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하여 금년부터 '산재예방 5개년 계획'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
-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하청 근로자 비율이 증가추세
 - * 하청근로자 사망자 비율(조사대상 중대재해 분석결과)
 - : $37.4\%('12년) \rightarrow 38.6\%('13년) \rightarrow 38.6\% ('14년) \rightarrow 40.2\%('15.6월)$
- □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 보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원·하청 공생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

<세부 추진과제>

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

- (원청 책임 강화) 사내하청 도급 사업주의 책임범위 확대 등 법 개정('15년 11월중 국회제출 예정)
 - * ①원청의 안전조치 대상 위험장소를 확대(20개소→ 원청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 있는 모든 장소)
 - ②원청을 하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상향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→ 일반재해 발생시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, 사망사고 발생 시 7년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
- (하청의 알권리 보장) 유해위험 정보제공 범위 확대*, 하청업체의 정보청구권 법제화 (산업안전보건법 개정, '16년말)
 - * 화학설비 작업→ 질식·붕괴 등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도급사업

- (분리 발주공사 조정 강화) 분리 발주되는 건설공시는 발주자가 전체 공시를 통합관리 하는 자 선임토록 의무 신설 (산업안전보건법 개정, '16년말)
- (원·하청 산재통계 통합산출) 고위험 업종 산업재해 통계시 하청의 재해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(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산출 방안 마련, '16년말)

② 교육, 정보제공 등 행정조치

- (안전보건 리더회의) 건설, 조선 등 산재취약 업종의 사업주(CEO)
 대상으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'안전보건 리더회의' 정기 개최(연 1회)
- (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보급) 하청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여건 조성을 위해 도급 계약시 안전이 고려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·보급 (*16년 상반기)
- (캠페인 전개) 매월 4일 '안전점검의 날'을 활용하여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 실시 유도
 - * 원하청 안전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계에 보급

민간 참석자 명단

분 야	성 명	직 책	
건설안전	김상효	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	
	박구병	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	
산업안전	백신원	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	
	김태구	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	
재난안전 일반	허억	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	
	이원호	광운대학교 대학원장	